

우에는 자진신고 납부 대상이다. 주요 자진 신고 납부대상은 다음과 같다.

- 시행지역의 주민이 미시행 지역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시행 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
- 시행지역의 주민이 미시행 지역 거주자를 위해 제공한 서비스(광고, 법률 등)가 그 시행지역내에서 제공되거나 주로 소비되는 경우
- 시행지역의 주민이 미시행 지역으로부터 무형동산(프랜차이즈<sup>3)</sup> 운영권 등)을 취득하여 그 시행지역에 소비하거나 주로 사용하는 경우

자진신고 납부의 목적은 구매의사 결정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HST 미시행 지역에서 구매를 하든 시행지역에서 구매를 하든 15%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 II. British Columbia州의 州稅 制度

British Columbia주의 주세는 세목별로 각각의 단행법에 근거하여 과세하고 있다.

3) franchise는 특정지역에 대한 독점권을 말한다. 이러한 독점권을 바탕으로 연쇄판매 조직이 형성된다. 이때 권리를 주는 기업을 franchiser, 체인 구성원을 franchisee라고 한다. 전자는 후자에게 독점판매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원재료·상품의 독점공급·경영지도·판매촉진원조 등을 제공한다. 또 후자는 계약에 따라 입회금을 내고, 판매액의 일정비율을 전자에게 지급하여 투자는 대부분 전자가 행한다.

### 1. 소득세(income tax)

소득세는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와 법인소득세(corporation tax)로 나누어진다. 양자의 근거법은 소득세법(Income Tax Act)이며 모두 연방정부에 의해 징수되어 캐나다 관세 및 세입청(Canada Customs and Revenue Agency)과 주정부 간의 조세징수협정(federal/provincial tax agreement)에 따라 주정부에 배분되었다. 그러나 2000과세연도부터 연방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과표로 하여 바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세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세율은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이 30,004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8.4%, 30,004달러에서 60,009달러인 경우에는 12.4%, 60,009달러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12.35%가 적용된다. 산출된 세액에서 각종 공제가 이루어지면 실제 납부할 세액은 줄어든다. 이러한 세액제로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의료공제, 장애인공제, 교육비공제 등이 있다. 또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부가세(surtax)가 부과되는데 그 세액이 5,300달러 초과시 초과금액의 30%를 세액으로 하며, 세액이 8,66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15%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5,300달러 초과시 산출세액을 합한 금액이 세액이 된다.

법인소득세의 일반세율은 16.5%이다. 다만,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세율은 2000년 7월 1일부터 종전의 5.5%에서 4.75%로 인하되었다.